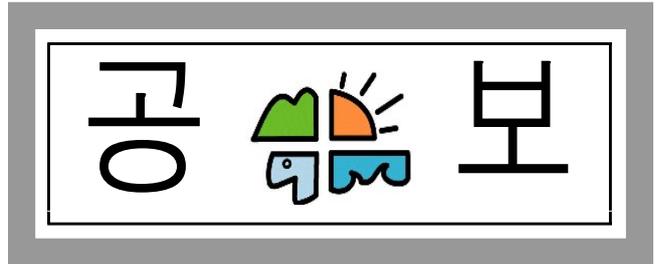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1266호 2020년 6월 1일(월)

조 례

-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2

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0년 6월 1일

속 초 시 장

인

속초시 조례 제2754호

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

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1항 중 “50명”을 “150명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36조제3항제1호 본문 중 “제34조”를 “제35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.

제42조제1항제3호 중 “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”를 “시가지경관지구”로 한다.

제4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경우
2.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
3. 높이 2미터 이하의 담장

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85제곱미터”를 “60제곱미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회로 하며, 단서의 부과 횟수는 총 5회까지”를 “1회”로 한다.

별표 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호 중 “바. 미관지구내 건축물”을 “바. 시가지경관지구내 건축물”로 하고, “단, 미관지구내 건축물은”을 “단, 시가지경관지구내 건축물은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4]

대지 안의 공지 기준 (제40조 관련)

1.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

대 상 건 축 물	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
가.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(일반공업지역 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)	- 준공업지역 : 1.5미터 이상 -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; 3미터 이상
나.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(일반공업지역 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)	- 준공업지역 : 1.5미터 이상 -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; 3미터 이상
다.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,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, 숙박시설(여관 및 여인숙 제외)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, 동식물원 제외) 및 종교시설	- 3미터 이상
라.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,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(학교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), 노유자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, 자동차관련시설(세차장 제외)	- 3미터 이상
마. 공동주택	- 아 파트 : 6미터 이상 - 연립주택 : 3미터 이상 - 다세대주택 : 2미터 이상
바. 시가지경관지구내 건축물 (3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)	- 3미터 이상

비고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2 비고3)에 따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33제곱미터 미만의 화장실, 경비실로 한정하고 건축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. (단, 시가지경관지구내 건축물은 제외한다.)

2.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

대 상 건 축 물	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외벽 각부분(처마, 계단, 발코니포함) 으로 부터의 거리]
가.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(일반공업지역 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준공업지역 : 1미터 이상 -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: 2미터 이상
나.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,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, 숙박시설(일반숙박시설은 제외)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, 동식물원 제외) 및 종교시설 다만,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.5미터 이상
다.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,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(학교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), 노유자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, 자동차관련시설(세차장 제외)다만,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.5미터 이상
라. 공동주택(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.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 파 트 : 6미터 이상 - 연립주택 : 3미터 이상 - 다세대주택 : 2미터 이상
마. 그 밖에 모든 건축물(단, 법 제59조 적용 건축물은 제외한다.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0.5미터 이상